

#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검 토 보 고

### 1. 회부경위

- 가. 의안번호 : 제1298호
- 나. 발 의 자 : 박수빈 의원 외 15명
- 다. 발의일자 : 2023년 10월 11일
- 라. 회부일자 : 2023년 10월 23일

### 2. 제안이유

- 도시안전 분야 보조사업 기준보조율을 상향함으로써 자치구 재정 상황과 무관하게 서울시민 모두에게 균등한 안전 환경을 제공하고자 함.

### 3. 주요내용

- 가. 도시안전 분야 보조사업 기준보조율 상향(안 제3조제1항제6호).

#### 4. 검토의견 (수석전문위원 이준석)

##### 가. 개정안의 개요

- 동 개정조례안은 자치구의 재정 상황과 관계없이 서울시 재원을 통해 균등한 안전 환경을 제공하고자 도시안전 분야 보조사업의 기준보조율 상한선을 현행 50%에서 100%로 조정하려는 것임.

##### 나. 시비 보조금 기준보조율의 근거 및 취지

-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sup>1)</sup>에 따르면,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지방보조금의 예산 편성 시 지방보조사업별로 적용하는 기준보조율을 ‘시·도의 조례’로 정하도록 명시함.
- 행정안전부는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 당시 (2021. 7. 13.) 표준조례안을 통해 분야별 기준보조율은 ‘조례’로, 사업별 기준보조율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함에 따라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는 8개 분야별로 기준보조율의 범위를 규정하고, 세부 사항은 규칙으로 위임하고 있음(제3조제1항).

---

1) 제4조(시·도비 기준보조율) ① 지방보조금이 지급되는 대상사업, 경비의 종류, 보조율 및 금액은 매년 예산으로 정하고,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지방보조금의 경우 예산 계상 신청 및 예산 편성 시 지방보조사업별로 적용하는 기준이 되는 보조율은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의 조례로 정한다. 다만, 「지방재정법」 제22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경비는 제외한다.

< 조례상 지방보조금 지급 대상 사업 및 기준보조율의 범위 >

분야	하한선(%)	상한선(%)
사회복지	30	100
공원·환경	30	100
도로·교통	30	50
도시계획·주택정비	30	50
산업경제	30	70
<b>도시안전</b>	<b>30</b>	<b>50</b>
문화관광	30	100
일반행정	30	50

- 이와 같이 상기의 법률이 기초자치단체에 지원하는 지방보조금의 경우 조례를 통해 기준보조율을 정하도록 명시한 취지는 지방보조금을 지역 여건에 맞게 자율적으로 설정하되 시·도와 시·군·구간 적정 재원 분담을 도모하고 이에 대한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 할 수 있음.

다. 개정안의 주요내용

- 동 개정안은 자치구에 대한 지방보조금 예산 편성 시에 적용되는 분야별 기준보조율 중 ‘도시안전’ 분야의 기준보조율의 상한선을 50%에서 100%로 확대하는 것임.

현 행	개 정 (안)
도시안전 : 30%부터 <b>50%</b> 까지	도시안전 : 30%부터 <b>100%</b> 까지

- 현행 기준에 따르면, 도시안전 분야와 관련한 시비 보조사업의 상한선은 50%로, 자치구의 재정 여건과 관계없이 최대 50%까지만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음.

- 그러나 현재 사회복지, 공원·환경, 문화·관광 분야의 경우 기준보조율 상한선이 100%이고, 최근 이상동기 범죄 등으로 시민의 안전에 대한 위협이 증가하고 있다는 점에서 도시안전 분야도 기준보조율 상한선을 100%로 상향할 필요성은 인정된다 하겠음.<sup>2)</sup>
- 특히 동 개정안에 따라 기준보조율의 상한선을 100%로 상향하는 경우 도시안전 분야에서 자치구에 대한 균등한 지원 기회를 확보하고, 자치구의 재정 여건과 관계없이 시민에게 안전한 환경을 제공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는 점에서 바람직한 입법조치라고 판단됨.
- 다만 서울시와 자치구 간 적정 재원분담을 도모하기 위해 기준보조율을 설정하는 취지를 고려하면, 실제적으로 적용되는 시비보조율은 서울시 및 자치구의 재정 여건<sup>3)</sup> 등을 고려해 규칙에서 정해지므로 동 개정조례안이 통과되더라도 입법 의도가 바로 실현될 수 있는 것은 아님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을 것임.

담당 조사관	연락처
성동준	02-2180-8055

2) 참고로 타 시도의 경우 광주광역시가 안전 분야의 기준보조율 상한선을 100%로 규정하고 있음.  
「광주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4조제1항제2호(공공질서 및 안전: 30% ~ 100%)

3) 최근 5년간 자치구 기준재정수요충족도(재정력 지수) 통계는 참고자료 참조.

【참고자료】

< 최근 5년간 자치구의 기준재정수요충족도\* >

구 분		2019	2020	2021	2022	2023
서울시	종로구	81.4	82.1	82.9	85.2	84.6
	중구	94.7	95.4	96.5	97.8	<b>97.8</b>
	용산구	78.5	78.9	80.8	82.6	82.7
	성동구	63.7	64.2	67.0	72.4	71.8
	광진구	62.3	62.4	64.9	66.7	66.6
	동대문구	57.2	53.5	57.3	60.0	<b>59.8</b>
	중랑구	52.7	51.7	57.4	57.4	<b>57.8</b>
	성북구	50.2	48.4	51.5	54.6	<b>55.2</b>
	강북구	53.2	52.8	57.0	54.5	<b>56.0</b>
	도봉구	51.1	50.4	53.8	54.4	<b>53.7</b>
	노원구	43.0	45.4	49.7	51.6	<b>51.6</b>
	은평구	55.2	54.9	58.4	57.2	<b>57.6</b>
	서대문구	58.9	59.5	63.2	64.9	65.2
	마포구	72.9	72.4	73.8	77.8	77.7
	양천구	58.2	58.4	60.6	65.0	65.0
	강서구	60.9	61.5	64.3	66.1	66.2
	구로구	56.0	55.8	59.4	61.5	61.6
	금천구	61.9	60.4	63.4	65.1	65.6
	영등포구	77.8	77.9	79.2	81.7	81.9
	동작구	61.7	61.2	63.3	65.6	65.4
관악구	54.5	52.7	55.3	56.4	<b>55.8</b>	
서초구	97.9	98.2	99.1	99.9	<b>99.9</b>	
강남구	182.3	203.1	204.3	166.8	<b>158.1</b>	
송파구	87.4	89.2	90.6	92.0	<b>92.2</b>	
강동구	62.4	62.2	64.4	68.2	68.8	

자료: 서울 열린데이터 광장 통계

\* 기준재정수요충족도(재정력지수)=기준재정수입액/기준재정수요액\*100

※ ‘기준재정수요충족도’는 100%보다 높으면 자체 세입으로 지자체 운영이 가능한 것을 뜻하며, 재정개선 목표설정에 직·간접적인 기준이 됨.